

# 2022년 태광산업(주)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2.01.01 ~ 2022.12.31)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 목 차 ]

I. 개요.....	03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04
1. 기업지배구조 정책.....	04
2. 주주.....	07
(핵심원칙1) 주주의 권리.....	07
(핵심원칙2) 주주의 공평한 대우.....	21
3. 이사회.....	30
(핵심원칙3) 이사회 기능.....	30
(핵심원칙4) 이사회 구성.....	36
(핵심원칙5) 사외이사의 책임.....	46
(핵심원칙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52
(핵심원칙7) 이사회 운영.....	54
(핵심원칙8) 이사회 내 위원회.....	65
4. 감사기구.....	68
(핵심원칙9) 내부감사기구.....	68
(핵심원칙10) 외부감사인.....	78

## I

## 개 요

- ▶ 기업명 : 태광산업(주)
  
- ▶ 작성 담당자 : (정) 성명 김종국 직급 경영임원 부서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02-3406-0241 이메일 jeffc@taekwang.co.kr  
(부) 성명 이한성 직급 부장 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3406-0383 이메일 eric@taekwang.co.kr
  
- ▶ 작성기준일 : 2022.12.31
  
-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이호진 외 5 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4.53%
		소액주주 지분율	13.16%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PTA, AN, 아크릴, 나일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태광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매출액	27,039	25,918	17,406
연결 영업이익	(1,221)	3,553	535
연결 계속사업이익	3,422	3,170	1,527
연결 당기순이익	3,422	3,170	1,558
연결 자산총액	49,100	49,225	40,602
별도 자산총액	38,690	40,790	35,112

##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 1. 기업지배구조 정책

- ▶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 추구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 ▶ 기업 고유의 지배구조 특징(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태광산업')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태광산업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3년 5월 현재 이사회와 60%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써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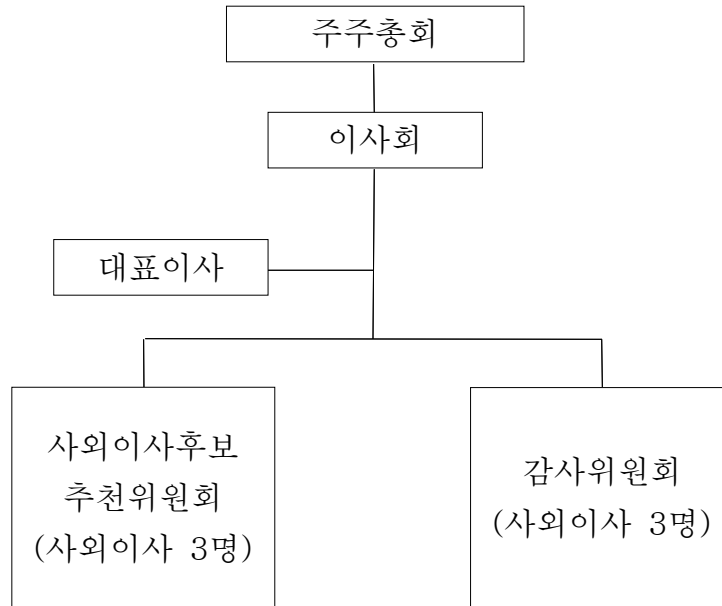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및 감사보고서 등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2) 지배구조 현황**

### **① 조직도**

<2023년 5월 기준>



## ② 지배구조의 특징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3명·60%로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태광산업은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라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는 각 대상별 특성과 전문성에 적합하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이유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와 독립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2. 주 주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표 1-①-1 활용)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1-①-1)

구 분	2023년 정기주주총회	2022년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3년 3월 15일	2022년 3월 10일	2021년 3월 5일	
소집공고일	2023년 3월 16일	2022년 3월 10일	2021년 3월 11일	
주주총회 개최일	2023년 3월 31일(금)	2022년 3월 25일(금)	2021년 3월 26일(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15일 전	주총 15일 전	주총 15일 전	
개최장소/지역	바비엡2 교육센터 지하 1층 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태광산업 본사 1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광산업 본사 1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 이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5명 중 2명 출석	6명 중 2명 출석	5명 중 2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5인 (기관 투자자 대리인 2인, 개인 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찬성발언, 경영에 대한 질의	1) 발언주주 : 8인 (기관 투자자 대리인 5인, 개인 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경영에 대한 질의	1) 발언주주 : 5인 (기관 투자자 대리인 4인, 개인 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 주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가.」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간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기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등(표 1-②-1 활용)

- 당사는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를 해당년도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표 1-②-1)

구 분	제62기 주주총회	제61기 주주총회	제60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3.03.24 2023.03.30 2023.03.31	2022.03.25 2022.03.30 2022.03.31	2021.03.26 2021.03.30 2021.03.31
정기주주총회일	2023.03.31	2022.03.25	2021.3.26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ii)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 당사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대리행사에 관한 권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표 1-②-2 활용)

- 당사는 2022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총 두 번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61기, 제62기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표 1-②-2)

정기		제61기 주주총회			2022.3.25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61기('21.1.1~'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 으로 같음	841,631	-	-	
제 2 호 의 안	제2-1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조진환)	가결	841,631	753,612	751,637
							(99.7%)
	제2-2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정철현)	가결	841,631	753,612	1,975
							(0.3%)
제3호 의안	특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최원준)	가결	301,599	213,580	188,320	
						(88.2%)	
						25,260	
						(11.8%)	
제4호 의안	보통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841,631	753,612	716,240	
						(95.0%)	
						37,372	

						(5.0%)
--	--	--	--	--	--	--------

정기	제62기 주주총회				2023.03.31
----	-----------	--	--	--	------------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 1 호 의 안	제1호	보통	제62기('22.1.1~'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841,631	-	-
	제1-1호	보통	1주당 현금배당금 1,750원(이사회안)	가결	841,631	783,220	641,926 (81.96%)
	제1-2호	보통	1주당 현금배당금 10,000원(주주제안)	제1-1호 의안 가결에 따른 자동부결	-	-	141,294 (18.04%)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부결	841,631	783,220	128,312 (16.38%)
제 3 호 의 안	제3-1호	보통	사외이사 최영진 선임의 건	가결	841,631	783,220	654,908 (83.62%)
							758,848 (96.89%)
	제3-2호	보통	사외이사 남유선 선임의 건	가결	841,631	783,220	24,372 (3.11%)
							782,812 (99.95%)
						408 (0.05%)	

제 4 호 의 안	제4-1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최영진 선임의 건	가결	298,166	240,251	215,708
							(89.78%)
	제4-2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남유선 선임의 건	가결	298,166	240,251	24,543
							(10.22%)
제5호의안	제4-2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남유선 선임의 건	가결	298,166	240,251	239,843
							(99.83%)
	제5호의안	보통	자기주식 취득의 건(주주제안)	부결	841,631	783,220	408
							(0.17%)
제6호의안	제5호의안	보통	자기주식 취득의 건(주주제안)	부결	841,631	783,220	127,752
							(16.31%)
	제6호의안	보통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가결	841,631	783,220	655,468
							(83.69%)
제7호의안	제6호의안	보통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가결	841,631	783,220	698,277
							(89.15%)
	제7호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1,631	783,220	84,943
							(10.85%)
제7호의안	제7호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1,631	783,220	782,522
							(99.91%)
	제7호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1,631	783,220	698
							(0.09%)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프로그램에 따라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려 하였으나,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등의 문제로 집중일 개최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를 적시에 공시하였습니다. 차년도 주주총회일은 더 많은 주주의 참석을 위해 가급적 집중일을 피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투표 도입 등에 대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며,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 (ii)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i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안건 관련 주주총회 찬반비율 명기)(표 1-③-1 활용)

-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특별한 안내를 하지 않고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권을 사용하여 의안을 제안할 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 6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3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iv)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표 1-③-2 활용)

▷ (표 1-③-2)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2022.03.17	트러스톤 자산운용	1. 현금성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2022.03.22	컨설팅 완료 후 해당 사안 검토 가능
		2. 주식 유동성 확대		액면분할은 당사에서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며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시 동일한 효과 발생
		3. 합리적인 배당정책		2022년 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13%라는 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과거 적자 시에도 꾸준한 배당 시행중
		4. 정기적인 IR 요청		2022년 2분기 실적 공시 이후부터 IR 행사 진행 예정
2022.06.03	트러스톤 자산운용	1. 현금성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2022.06.30	컨설팅 완료 후 해당 사안 검토 가능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2. 주식 유동성 확대		액면분할은 당사에서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며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시 동일한 효과 발생
		3. 합리적인 배당정책		2022년 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13%라는 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배당정책 유지중
		4. 정기적인 IR 요청		2022년 2분기 실적 공시 이후부터 IR 행사 진행 예정
2022.07.26	트러스톤 자산운용	1. 현금성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2. 주식 유동성 확대 3. 합리적인 배당정책 4. 정기적인 IR 요청  위 4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사외이사 각각의 찬반여부 및 의견요구	2022.08.02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이사회에서 타 이사들과 논의할 것임
2022.08.18	트러스톤 자산운용	1 현금성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2. 주식 유동성 확대 3. 합리적인 배당정책 4. 정기적인 IR 요청  위 4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 줄 것을 요청	2022.11.23	2022.11.11.(금) 개최된 이사회에서 논의한 4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견 전달
2022.12.21	트러스톤 자산운용	태광산업의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에 대한 투자설명회 요청	2022.12.29	설명회 개최 검토 중
2023.01.09	트러스톤 자산운용	1. 변경 (분리 선출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수를 2명으로 명시)	2023.02.03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이 2명이 된 것은 당사의 절차상 단순 하자이며, 후임 이사 후보를 일괄 선출하면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이 1명이 되어 상법상 문제점 발생하지 않음
		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는 추천하지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 후보(분리 선출) 선정 방식이 아닌 일괄 선출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않을 것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제안사항 해당없음
		3. 계열사 지원성 내부거래 중지 및 주주환원정책 발표 및 이행		지원성 내부거래는 없으며 공정거래법 및 상법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중
		4. 주식 유동성 증가 조치 실행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은 검토 계획 없음
2023.01.10	트러스톤 자산운용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	2023.01.26	주주명부 파일 송부
2023.01.18	트러스톤 자산운용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2023.02.01	당사 내방하여 회계장부 열람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내방하지 않음
2023.02.09	트러스톤 자산운용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주주제안 1. 정관일부 변경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3. 현금배당의 건 4. 자기주식 취득의 건	2023.02.17	당사의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에서 주주제안 사항을 보고한 후 주주총회 상정 여부에 대해 최종 확정할 것임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에 대한 안내와 구체적인 내부 기준은 없으나 주주제안 접수 시 관련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주주제안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은 회사의 성과에 기반한 현금 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주환원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업연도에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경영실적과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Cashflow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사항은 매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배당 현황은 당사의 홈페이지 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taekwang.co.kr/ir/Corporate5.asp>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KIND(<http://kind.krx.co.kr>)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KIND에 '현금·현물배당 결정'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배당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표 1-⑤-1 활용)

- 당사는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⑤-1)

(주, 원, 억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sup>1)</sup>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sup>2)</sup>	배당성향 <sup>3)</sup>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2년	12월	보통주	-	1,750원	1,472,854,250원	0.2%	0.43%	-5.6%
2021년	12월	보통주	-	1,750원	1,472,854,250원	0.2%	0.46%	0.45%
2020년	12월	보통주	-	1,550원	1,304,528,050원	0.2%	0.85%	0.27%

1) 1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2)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금총액 / 연결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i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 (차등배당내역, 이사회 결정일, 주당배당금, 총배당금 등)

- 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3년도 배당금액을 전년과 동일한 주당 1,75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평균적인 배당성향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 적자 시에도 꾸준히 배당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같이 적자 등의 경우에도 배당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들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결과를 기준일을 명시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i) 발행가능 주식 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표 2-①-1 활용)

- 당사 정관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에 의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113,400주이고 우선주 등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자기주식 271,769주를 제외한 841,631주입니다.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2-①-1)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sup>1)</sup>	발행주식수(주) <sup>2)</sup>	발행비율 <sup>3)</sup>	비고
보통주	1,600,000	1,113,400	69.59*	
종류주	-	-	-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3)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ii)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등

-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윤리규정에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으로 '첫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주주의 이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주주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법규와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셋째,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등입니다.

이에 당사는 정관 제21조(주주의 의결권)에 의거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기 명의로 등록된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일정, 대상, 주요 내용 등)(표 2-①-2 활용)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정기적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미팅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 주주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및 '신문고' 소통창구 운영을 통하여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하는 방식의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의사소통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소리 : [http://www.taekwang.co.kr/customer\\_voc/form.asp](http://www.taekwang.co.kr/customer_voc/form.asp)

▶ 신문고 :

<http://www.taekwanggroup.co.kr/homepage/board/taekwangNewspaperIntro.do>

▷ (표 2-①-2)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소액주주와의 대화를 구분하여 기재) 개최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2.01.04	국내기관투자자	대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	-
2022.05.20	국내기관투자자	대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	-
2022.06.27	국내기관투자자	서면	주주서한에 대한 회신	
2022.08.02	국내기관투자자	서면	주주서한에 대한 회신	
2022.11.23	국내기관투자자	서면	주주서한에 대한 회신	
2022.12.29	국내기관투자자	서면	주주서한에 대한 회신	
2023.01.09	국내기관투자자	대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2023.02.03	국내기관투자자	서면	주주서한에 대한 회신	
2023.05.18	국내기관투자자	대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ii)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모두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www.taekwang.co.kr)를 통해 공시/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시 담당자 : 02-3406-0866, l.hyuk@taekwang.co.kr

▶ IR 담당자 : 02-3406-0418, hwlee@taekwang.co.kr

(iii)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 여부 및 영문 공시 내역(표 2-①-3 활용)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중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공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IR 담당자 연락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영문 공시 실시 및 공시/IR 담당자 연락처 공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영문 홈페이지 : <http://www.taekwang.co.kr/en/index.asp>
- ▶ 중문 홈페이지 : <http://www.taekwang.co.kr/ch/index.asp>

▷ (표 2-①-3)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  
(기업이 직접 작성하여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제출한 영문공시)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 내용(한글)
-	-	-

(iv) 공정공시 내역(표 2-①-4 활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공정공시를 제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 (표 2-①-4)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제출한 공정공시)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2.12.19.	장래사업·경영 계획(공정공시)	중장기 대규모 투자계획

(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지정 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  
(표 2-①-5 활용)

▷ (표 2-①-5)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등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 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공시 불이행	2023.04.05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 송)('23.02.27)의 지연 공시('23.03.14)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 송) 정정사항 ( '23.03.08)의 지연공 시('23.03.14)	0	8,000,000	공시업무 프로세스 점검 및 체크리스트 보완. 관련부서에 공시대상사례공유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  
공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  
해 설명한다.

- 당사는 수시적인 회사 방문 및 회사 홈페이지(www.taekwang.co.kr) 내 소통창구  
를 통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향후 정기적인 IR 및 공정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보다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ii)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말함

(iii)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다(정기보고서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준하여 기재)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등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의 경우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및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_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따라 이사 등이 자기 회사와 거래 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거래공시대상 행위)에 따라 해당 내부거래 발생 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준법감시인도 준법통제기준에 근거하여 계열회사간 거래 점검 및 공정거래 관련 준법 여부를 상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내역 및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2-2-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22년 2차	2022.03.10.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22년 5차	2022.03.25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2년 6차	2022.03.31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22년 7차	2022.05.11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2년 8차	2022.05.13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22년 9차	2022.06.15	대규모 내부거래(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1) 승인의 건
		대규모 내부거래(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2) 승인의 건
'22년 10차	2022.08.09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2년 11차	2022.11.11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2년 12차	2022.12.27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3년 2차	2023.03.09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3년 3차	2023.03.15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3년 4차	2023.05.10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표 2-2-2)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① 가지급금 및 대여금 (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2022.1.1~2022.12.31 기준, 천USD)

법인명	관계	구분	계정 과목	변동내역				미수 이자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태광산업(주)개성	계열회사	해외법인	장기대여금	15,879	-	-	15,879	-
Taekwang Industrial Co. Lagos Representative Office Ltd	계열회사	해외법인	단기대여금	150	-	26	124	6
합계				16,029	-	26	16,003	6

② 채무보증 내역 (채무잔액 기준)

(2022.1.1~2022.12.31 기준, 천USD)

법인명	관계	구분	채권자	변동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태광화섬(상속)유한공사	계열회사	해외법인	한국수출입은행	59,000	-	-	5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목적 차입금 등 상환보증</li> <li>• 보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D 25,000 : 2022.04~2023.04</li> <li>- USD 14,000 : 2022.03~2023.03</li> <li>- USD 20,000 : 2022.03~2023.03</li> </ul> </li> </ul>
			산업은행	17,000	-	17,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목적 차입금 등 상환보증</li> <li>• 보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D 17,000 : 2021.06~2022.06</li> </ul> </li> </ul>
합계		-	-	76,000	-	17,000	59,000	

③ 채권 내역

(2022.1.1~2022.12.31 기준, 백만원)

법인명	관계	종류	변동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흥국생명보험(주)	계열회사	무보증 후순위사채	15,000	-	15,000	-
		신종 자본증권	25,000	-	25,000	-
합계		-	40,000	-	40,000	-

④ 자산양수도 내역

(2022.1.1~2022.12.31 기준,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거래목적	거래일자	거래일기준	거래대상물	거래금액
(주)티시스	계열 회사	자산매입	2022.01.01.~ 2022.12.31	매입일자	건축설비	5,563
흥국생명보험(주)	계열 회사	자산매도	2022.03.31	매도일자	무보증 후순위사채	15,441
흥국생명보험(주)	계열 회사	자산매도	2022.03.31	매도일자	신종자본증권	25,000
흥국생명보험(주)	계열 회사	자산매입	2022.12.27	매입일자	보통주	49,252
합 계						95,256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회사 정책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해당 사항 발생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 차원의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 3. 이사회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사항

- 당사 이사회 규정 제 10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장 선임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 주식배당 결정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16) 이사의 보수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직위의 보·면
- (4)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6) 간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출자(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지분 처분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및 폐지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또는 양도
  - 나.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 다. 기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 (3) 결손의 처분
- (4) 신주의 발행
- (5) 사채의 모집

- (6) 준비금의 자본전입
- (7) 전환사채의 발행
-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9) 명의개서 대리인의 결정 및 변경
- (10)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차입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다.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 라. 건당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거래공시대상 행위에 대한 사항

라.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겸업 승인

마.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 (심의·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 내용 및 효과

- 위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마.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심의·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가 가능합니다.

- (iii) 이사회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28조의2 및 이사회규정 12조의2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4. 감사기구」를 참고 부



탁드립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을 충족하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이렇게 명문화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과 당사 지원부서의 충분한 지원으로 현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i)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ii)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iii)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시 정관 제 27조와 이사회규정 제5조의3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행기간 동안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등 평상시에 관리된 대표이사 후보군 중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정 후 상법 제389조, 정관 제 24조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승계정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 기업활동은 사업, 재무, 환경안전, 노사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문서화된 리스크관리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 또는 실무조직에서 리스크를 인식하면 유관부서가 모여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또한 경영진 지시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대응방안 수립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 및 논의되고 있습니다.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법적 자문업무 등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하며 상시적인 준법통제활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

- 내부통제 관련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업무는 공시책임자(재무실장) 감독 하에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정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공시 통제 및 공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인원 구성 포함) 등 관련 조직도(표 4-①-1 활용)
-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①-2 활용)
- (i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표 4-①-3 활용)
- (iv) 사외이사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수, 비율, 연임 현황 등을 설명
- (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미분리 시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는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당사와 같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사외이사는 과반수 이상으로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두 위원회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주요역할은 아래 표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기획실장 1명과 경영기획팀 부장 1명, 차장 1명, 대리 2명, 사원 1명이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실장 1명, 감사팀 차장 1명, 과장 2명, 사원 1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감사기능의 강화 및 연속성,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사외이사(감사위원장), 나정인 사외이사(감사위원)의 경우 2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쳤으며 2023년 주주총회에서 최영진 사외이사와 남유선 사외이사가 새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외이사들은 모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회계,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 제5조 3항 및 정관 제 27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장은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들만의 회의체인 사외이사회나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 (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 내 이 사	조진환	남 (65세)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2022.03.25	2024.03.25	기업경영 일반	-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 태광산업(주) 울산본부 석유화학3공장장 - 태광산업(주) 석유화학사업본부 대표
사 내 이 사	정철현	남 (59세)	대표이사	2022.03.25	2024.03.25	기업경영 일반	- 부산대학교 섬유공학과 학사 - 태광산업(주) 아크릴 공장장 - 대한화섬(주) 울산공장 공장장 - 태광산업(주) 섬유사업본부 대표
사 외 이 사	최원준	남 (42세)	감사위원회 위원	2022.03.25	2024.03.25	기계공학 (교수)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 MIT 기계공학 박사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사 외 이 사	최영진	남 (62세)	사외이사	2023.03.31	2025.03.31	회계 전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 - 감사원 재직(25년)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사 외 이 사	남유선	여 (57세)	사외이사	2023.03.31	2025.03.31	법과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석,박사) - U.C버클리 법학(석,박사) - 법무부 정책위원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표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sup>1)</sup>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총 3인) (A)	위원장	사외 이사	최영진	남	B	1. 사외이사 후보 검증 2.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	사외 이사	남유선	여	B		
	위원	사외 이사	최원준	남	B		
감사위원회 (총 3인) (B)	위원장	사외 이사	남유선	여	A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	사외 이사	최영진	남	A		
	위원	사외 이사	최원준	남	A		

1) 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사회내 위원회' 코드(ex. A, B, C, ...) 표기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지 설명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의 구성, 각 전담부서의 지원 등을 항시 고려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맞는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여성 이사 선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의 마련 여부 및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

-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별도의 구체적 기업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2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환 사내이사는 화학공학과를 졸업 후 태광산업(주)에 입사하여 석유화학3공장장을 역임하는 등 화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당사 석유화학사업본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정철현 사내이사의 경우 섬유공학과를 졸업 후 대한화섬(주)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공장장을 역임하는 등 화학섬유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당사 첨단소재사업본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두 사내이사 모두 각 사업부문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과 각 사업본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성을 가진 적임자입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제도를 통하여 이사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기계공학과 회계,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진 사외이사는 감사원에서 25년간 재직 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재직 중입니다. 남유선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위원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회계 및 법적 리스크 사항들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원준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MIT 기계공학 박사로서 현재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표 4-②-1 활용)

- 당사의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외 이사	최영진	2023.03.31	2025.03.31	2023.03.31	선임	재직
	남유선	2023.03.31	2025.03.31	2023.03.31	선임	재직
	최원준	2022.03.25	2024.03.25	2022.03.25	선임	재직
	김대근	2021.03.26	2023.03.26	2021.03.26	선임	퇴직
	나정인	2021.03.26	2023.03.26	2021.03.26	선임	퇴직
	김오영	2016.03.18	2022.03.27	2022.03.27	임기만료	퇴직
사내 이사	조진환	2022.03.25	2024.03.25	2022.03.25	선임	재직
	정철현	2022.03.25	2024.03.25	2022.03.25	선임	재직
	정찬식	2021.03.26	2023.04.01	2022.03.25	사임	퇴직
	박재용	2020.07.31	2023.03.31	2022.03.25	사임	퇴직
	홍현민	2016.03.18	2022.03.27	2021.03.31	사임	퇴직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동 위원회의 구성현황(사외이사 비율 포함)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위원회는 위원 3명 모두 사외이사로 총 위원수의 과반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로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세부원칙 8-②」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후보 관련정보를 충분히,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하는지 여부(표 4-③-1 활용)

- 위 과정을 거쳐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사내이사 후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거친 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됩니다. 이때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사 후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일 기준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③-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3.03.15 (주총 16일전)	2023.03.31	사외	최영진	1. 후보자 상세 이력 2. 신규·재선임 여부 3. 겸직현황 등	
		사외	남유선		
2022.03.10 (주총 15일전)	2022.03.25	사내	조진환	1. 후보자 상세 이력 2. 신규·재선임 여부 3. 겸직현황 등	
		사내	정철현		
		사외	최원준		

(ii)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사업보고서 기재와 기타 방법 구분)

-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기재하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을 설명한다.

- 당사는 현재 총 17명의 임원이 재직 중에 있으며, 이 중 등기임원은 5명입니다.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임원현황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조진환	남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총괄
정철현	남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총괄
최영진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남유선	여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원준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김종국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관리
전정식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송종호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
석남재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장근배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관리
강석훈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관리
임병욱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관리
이기범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관리
허인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송병준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이명철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
노중현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구매
김진숙	여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관리
성정훈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이상희	남	경영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기술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임원 선임 대상자에 대해 입사 전(임원계약 체결 전) 과거 재직회사 및 관련 인원에게 Reference Check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한다. 만일 선임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성명 등은 기재 생략)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현재 그러한 혐의가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및 도입한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관련규정,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한다.

-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표5-①-1 활용)
- (ii)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최근 3개 연도)
- (iii)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영진 사외이사는 대한화섬에서 1년(2022.03~2023.03)간 사외이사로 재직하였  
습니다. 최원준 사외이사는 (주)고려저축은행에서 6개월(2017.09 ~ 2018.03)간, 대  
한화섬(주)에서 4년(2018.03 ~ 2022.03)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습  
니다. 당사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계열회사 포  
함)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표 5-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하 는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 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 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최영진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남유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원준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iv) 기업이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등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 및 재직경력이 없는 인원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경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규정이 정관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후보검토 시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선임 후 발생하는 건 또한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0년 0월)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한다.(표5-①-2 활용)

- 당사 사외이사 중 2023년 5월 현재 재직기간이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표 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최영진	2개월	-	1년 2개월	-
남유선	2개월	-	2개월	-
최원준	1년 2개월	-	5년 8개월	-

다.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상기 (iv)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제정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표 5-②-1 활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당사를 제외한 1개 법인에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비영리법인 제외) 현재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전원은 높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료 검토·질의 등을 통해 기업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3명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표 5-②-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sup>1)</sup>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sup>2)</sup>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최영진 (감사위원)	2023.03.31	2025.03.31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남유선 (감사위원)	2023.03.31	2025.03.31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원준 (감사위원)	2022.03.25	2024.03.25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1) 감사위원일 경우 성명 하단에 기재

2) 겸직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인 제공 현황
- (ii)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제공을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충분한 지원을 위해 회계팀, 자금팀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여 자료 작성 및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당사는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품목별로 성과와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내용의 별도보고를 매분기 이사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더욱 객관적인 시야로 당사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이사회에 제공하여 의사 판단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i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역(회의 일시, 주요 논의사항, 참석현황 등)(표 5-③-1 활용) 단,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는 제외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제외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5-③-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사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	-	-	-	-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간사 및 그 사무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 내역을 선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부서 외 모든 부서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을 안내·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는지,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i)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ii) 구체적 평가방법(예: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 및 관련 규정 등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나, 참석률, 참여도, 자기평가표 등의 지표를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의 내용과 해당정책의 수립 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기준
-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성과 연동 여부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 사외이사의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합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 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3인(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내부적으로 산정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 (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표 7-①-1 활용)
- (iii)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안전통지일 명시) 등의 현황을 기재(표 7-①-1 활용)

- 당사는 정관 제4장 '이사·이사회' 및 이사회규정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안건을 포함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개최한 이사회는 17차례이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①-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2년 1차	결의 사항	제6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재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2.10	2022.02.03	5/5
	결의 사항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22년 2차	결의 사항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조정내역)	가결	임시	2022.03.10	2022.03.08	5/5
	결의 사항	이사 후보 추천의 건(조진환)	가결				
	결의 사항	이사 후보 추천의 건(정철현)	가결				
	결의 사항	이사 후보 추천의 건(최원준)	가결				
	결의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이사 보수한도액 요청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결의 사항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가결				
	보고 사항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사항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보고				
	보고 사항	감사위원회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보고				
	보고 사항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보고	보고				
'22년 3차	결의 사항	제6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3.23	2022.03.16	5/5
'22년 4차	결의 사항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2.03.25	2022.03.23	6/6
'22년 5차	결의 사항	이사 겸직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3.25	2022.03.23	6/6
	결의 사항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2년 6차	결의 사항	이사 겸직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3.31	2022.03.29	5/5
	결의 사항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22년 7차	결의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5.11	2022.05.03	5/5
	결의 사항	아라미드 증설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수출입은행 대위권 행사를 위한 근저당권 제공에 관한 건	가결				
	보고 사항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22년 8차	결의 사항	이사 겸직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5.13	2022.05.12	5/5
	결의 사항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22년 9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1)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6.15	2022.06.14	5/5
	결의 사항	제2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2)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3호 의안 : 나이지리아 대표사무소 폐지의 건	가결				
'22년 10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8.09	2022.08.08	4/5
	결의 사항	제2호 의안 : 자사주신탁계약 기간 연장의 건	가결				
	보고 사항	제1호 보고 : 2022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22년 11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11.11	2022.11.10	4/5
	결의 사항	제2호 의안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보고 사항	제1호 보고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2년 12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흥국생명 보유 흥국화재 보통주 매입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12.27	2022.12.23	5/5
	결의 사항	제2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3호 의안 :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4호 의안 :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5호 의안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6호 의안 : 신규 사업자 등록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7호 의안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가결				
'23년 1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3.02.16	2023.02.08	5/5
'23년 2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3.03.09	2023.02.28	5/5
	결의 사항	제2호 의안 : 경영임원 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3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				
	결의 사항	제3-1호. 정관 일부 변경 및 주식 분할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분리선임의 건	부결				
	결의 사항	제3-3호. 현금 배당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3-4호. 자기주식 취득의 건	가결				
'23년 3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조정내역)	가결	임시	2023.03.15	2023.03.14	5/5
	결의 사항	제2호 의안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결의 사항	제2-1호. 사외이사 후보 최영진 (신임)	가결				
	결의 사항	제2-2호. 사외이사 후보 남유선 (신임)	가결				
	결의 사항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결의 사항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최영진 (신임)	가결				

회사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3년 3차	결의 사항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남유선 (신임)	가결	임시	2023.03.15	2023.03.14	5/5
	결의 사항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요청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6호 의안 : 주주제안 심사의 건	-				
	결의 사항	제6-1호. 정관 일부 변경 및 주식 분할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6-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분리선임의 건	부결				
	결의 사항	제6-3호. 현금 배당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6-4호. 자기주식 취득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7호 의안 : 제62기 정기주주 총회 소집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8호 의안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9호 의안 :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결의 사항	제9-1호. 이사 겸직에 따른 겸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서한물산(주), (주)세광패션, 대한 화섬(주))	가결				
	결의 사항	제9-2호. 이사 겸직에 따른 겸 직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티엘 케미칼(주))	가결				
	보고 사항	제1호 보고 : 2022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사항	제2호 보고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보고				
	보고 사항	제3호 보고 : 감사위원회의 2022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보고				
보고 사항	제4호 보고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보고	보고					
'23년 4차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조정내역)	가결	임시	2023.03.23	2023.03.20	5/5
'23년 5차	결의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대한화섬)	가결	정기	2023.05.10	2023.05.02	5/5
	결의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2, 8월에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3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심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 후,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표 7-②-1 활용) 및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표 7-②-2 활용)을 기재한다.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을 설명한다.

-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규정 제9조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 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표 7-②-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내이사					사외이사																		
		홍현민	정찬식	박재용	조진환	정철현	홍성태	김오영	이재현	김대근	나정인	최원준													
1차	2021.02.09	출석	신규 선임 (2021.4. 1~)	출석	신규 선임 (2022.3 .25~)	신규 선임 (2022.3 .25~)	불참	참석	참석	신규 선임 (2021.3 .26~)	신규 선임 (2021.3 .26~)	신규 선임 (2022.3 .25~)													
2차	2021.03.05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3차	2021.03.10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4차	2021.03.24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5차	2021.03.26	출석		출석			불참	참석	참석																
6차	2021.03.26	출석		출석			참석	참석	불참																
7차	2021.05.13	사임	출석	출석	신규 선임 (2022.3 .25~)	신규 선임 (2022.3 .25~)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참석	참석	참석	참석													
8차	2021.06.02		출석	출석									참석	참석											
9차	2021.06.17		출석	출석									불참	참석	참석										
10차	2021.08.12		출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11차	2021.11.11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12차	2021.12.28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13차	2022.02.10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14차	2022.03.10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15차	2022.03.23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16차	2022.03.25		사임	사임									출석	출석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17차	2022.03.25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18차	2022.03.31												출석	출석								참석	참석	참석	찬성
19차	2022.05.11												출석	출석											
20차	2022.05.13												출석	출석											
21차	2022.06.15												출석	출석											

22차	2022.08.09	사임	사임	사임	출석	출석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출석	출석	불참
23차	2022.11.11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24차	2022.12.27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5차	2023.02.16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6차	2023.03.09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7차	2023.03.15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8차	2023.03.23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회차	개최일자	사내이사					사외이사					
		조진환	정철현				최영진	남유선	최원준			
29차	2023.05.10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표 7-②-2)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sup>1)</sup>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3	2022	2021		2023	2022	2021
홍현민	사내	2016.03.18 ~ 2021.03.31	100%	-	-	100%	100%	-	-	100%
박재용	사내	2020.07.31. ~ 2022.03.25	96%	-	100%	92%	87.5%	-	75%	100%
김오영	사외	2016.03.18 ~ 2022.03.27	96%	-	100%	92%	100%	-	100%	100%
홍성태	사외	2017.03.24 ~ 2021.03.29	67%	-	-	67%	100%	-	-	100%
이재현	사외	2015.03.20 ~ 2021.03.29	67%	-	-	67%	100%	-	-	100%
정찬식	사내	2021.04.01 ~ 2022.03.25	100%	-	100%	100%	87.5%	-	75%	100%
김대근	사외	2021.03.26 ~ 2023.03.26	100%	100%	100%	100%	96.8%	90.5%	100%	100%
나정인	사외	2021.03.26 ~ 2023.03.26	97.3%	100%	92%	100%	93.5%	90.5%	90%	100%
조진환	사내	2022.03.10 ~ 현재	100%	100%	100%	-	95.4%	90.9%	100%	-
정철현	사내	2022.03.10 ~ 현재	100%	100%	100%	-	95.4%	90.9%	100%	-
최영진	사외	2023.03.31 ~ 2025.03.31	100%	100%	-	-	100%	100%	-	-

남유선	사외	2023.03.31. ~ 2025.03.31	100%	100%	-	-	100%	100%	-	-
최원준	사외	2022.03.25. ~ 2024.03.25	93.7%	100%	87.5%	-	95.2%	90.5%	100%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세부원칙 4-①에서 기재한 경우 생략 가능)을 설명한다.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역할, 구성 현황은 「세부원칙 4-① 내 표 4-①-3」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감사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i)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임면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중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핵심원칙 6. 과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는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최근 3개 사업년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을 설명한다. (표8-②-1 활용)(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세부원칙 9-②에서 기재)

▷ (표 8-②-1) 이사회內 위원회 개최 내역(감사위원회의 경우 표 9-②-1에서 작성)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1년 1차	2021.03.05	4/4	결의 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2년 1차	2022.03.10	3/3	결의 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3년 1차	2023.03.15	3/3	결의 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ii)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sup>1)</sup>		
			2023	2022 (최근년도)	2021
사내	홍현민	100%	-	-	100%
사외	김오영	100%	-	100%	100%
사외	홍성태	100%	-	-	100%
사외	이재현	100%	-	-	100%
사외	김대근	100%	100%	100%	-
사외	나정인	100%	100%	100%	-
사외	최원준	100%	100%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 4. 감사기구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i)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관련 경력·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표 9-①-1 활용)

- 23년 3월 신규 선임된 최영진 이사는 감사원 재직 24년으로 감사원법에 의거 국가(외교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지자체),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회계, 결산감사 등을 통한 감독업무 수행하였으며, 또한 다른 감사위원도 다년간(3~6년) 감사경력이 있는바 당사의 이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 이사	남유선	NH농협은행 감사위원장 (2019.03~2022.03) 한국거래소 KRX 공시위원회 위원장(2020~현재)	
위원	사외 이사	최영진	감사원 재직 (1992.01~2017.03) 법무법인 아주 고문(2020.03~현재) 대한화섬(주) 감사위원장 (2020.03~2023.03)	회계전문가
위원	사외 이사	최원준	(주)고려저축은행 감사위원 (2017.09~2018.03) 대한화섬(주) 감사위원 (2018.03~2022.03)	

(ii)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 요건, 상근감사의 겸직 허용 여부 등)

-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제29조의8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29조의9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13조, 제15조에 업무감사권,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자회사 조사권,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여 독립적 운영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 제3항에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화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13조, 제15조에 따라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공시대상기간중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교육계획 이행여부 등)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 환경의 변화, 관련법규의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 2022.01.01 ~ 2022.05.31)

NO	교육내용	주최	일자 및 시간	참석위원
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 횡령 등 부정 위험 대응 체크포인트 -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의 업무지침 참고자료 개정내용	한국상장회 사협의회	2022.06.27 (온라인 자유수강)	김대근 나정인 최원준

(iii)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지시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iv)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

- 당사는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속부서로 배치되어 있

으며, 감사위원회는 구성원의 보직 및 전보 등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조직평가도 직접 시행하는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감사계획과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직접 감사위원회에 대면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23.05.31)

부서명	직원수(명)	직위(내부감사 경력)	비고
감사실 (감사팀)	5	실장(8개월), 차장(12년), 과장2(6년 2개월/ 3개월), 사원(2개월) * 자격증보유 : 전산회계, 회계관리	

(v)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정도

- 당사는 감사위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자료를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에서 파악한 주요한 경영이슈는 사안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자회사 조사권 등을 명문화하고 있어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i) 보수정책 운영 현황,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등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법적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으며 2022년 감사위원에게 지급된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2022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	117	39	감사위원회 외 사외이사 없음

※ 인원수는 2022년 12월 31일 재직자 기준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평균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감사 및 내부회계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을 위한 각종 규정과 지원 그리고 전담 지원조직을 마련하고 있기에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로부터 내부감사계획 및 결과, 경영에 관한 주요한 이슈사항, 안전환경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5월말까지 감사위원회의 부의안건(결의사항)으로는 감사보고, 감사위원장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등이 있었으며, 보고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감사실의



업무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금융위원회의 지정감사인 제도에 따라 한올회계법인이 지정되었으며, 2022년도 감사 및 분반기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삼일 회계법인으로 3개년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는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직접 대면보고 받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ii)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 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표 9-②-1 활용)

- 감사위원회는 2022년 6회, 2023년 상반기 3회, 총 9회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 시 감사위원 3인이 높은 참석률로 참석하여 부의안건(결의사항) 14건, 보고사항 18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부의안건(결의사항)으로는 감사보고, 감사위원장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등이 있었으며, 보고사항으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감사실 업무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 (표 9-②-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석 내역 및 출석률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3.10	3/3	결의사항	제 61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 승인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외부감사인 제 61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보고
2차	2022.03.25	3/3	결의 사항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차	2022.05.11	3/3	결의 사항	전기 외부감사인 평가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2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의 건	보고
			보고 사항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보고
4차	2022.08.09	2/3	결의 사항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기준수립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2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반기 검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보고
5차	2022.11.04	3/3	결의 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주수사항 변경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보고 사항	내부회계 설계평가 결과보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연결내부회계 구축 중간보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보고
6차	2022.11.11	3/3	보고 사항	2022년 외부감사인 3분기 검토의 건	보고
7차	2023.03.13	3/3	보고 사항	외부감사인의 제62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감사실 업무보고의 건	보고
8차	2023.03.15	3/3	보고 사항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보고의 건	보고
			결의 사항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62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가결

9차	2023.05.10	3/3	결의 사항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전기 외부감사인 평가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의 건	보고
			보고 사항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의 건	보고
			보고 사항	감사실 업무 보고의 건	보고

②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비고
	개최일자	2022.03.10	2022.03.25	2022.05.11.	2022.08.09	2022.11.04	2022.11.11	2023.03.13	
사외	김오영	출석	출석	-	-	-	-	-	
	김대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나정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원준	-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남유선	-	-	-	-	-	-	-	
	최영진	-	-	-	-	-	-	-	

구분	회차	8차	9차	비고
	개최일자	2023.03.15	2023.05.10	
사외	김오영	-	-	임기만료 (2022.03.25)
	김대근	출석	-	임기만료 (2023.03.26)
	나정인	출석	-	임기만료 (2023.03.26)
	최원준	출석	출석	신규선임 (2022.03.25)
	남유선	-	출석	신규선임 (2023.03.31)
	최영진	-	출석	신규선임 (2023.03.31)

③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2	2021	2020
사외	김오영	100.0	100.0	100.0	100.0
사외	홍성태	100.0	-	-	100.0
사외	이재현	100.0	-	-	100.0
사외	김대근	100.0	100.0	100.0	-
사외	나정인	100.0	100.0	100.0	-
사외	최원준	80.0	80.0	-	-

(iii)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년2회(2월, 8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감사업무의 충실성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일자를 정하여 늦어도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구두로서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및 제9조) 실제 운영은 감사위원들의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부의안건(결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안건자료를 감사위원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가 기재되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록이란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등을 포함합니다.

당사 정관 제29조의9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에 따른다는 정관 제33조와 감사위원회 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참석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총 9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 및 논의하였으며, 높은 출석률로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절차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7항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 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8항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정감사 외 외부감사인 자율선임 시 사업규모가 비슷한 3개 이상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내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합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한올회계법인으로 3개년 선임하였습니다. 지정감사 계약기간 만료 후, 2023년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ii)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현황(위원 명단, 위원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한 평가결과 등)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로써 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iii)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평가, 감사계획, 감사시간 등)

- 2023년 3개년 지정감사가 완료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서 삼일회계법인 선임에 관한 회의를 2022년 11월 4일 감사위원회에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회계사들의 감사경력, 타회사 감사 내역, 3개년도 매출액, 징계 여부, 감사계획과 시간 그리고 보수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결의사항으로 삼일 회계법인을 3개년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iv)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여부 및 그 내용 (외부감사 담당 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등)

- 2022년 외부감사 종료 후 당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실은 2023년 5월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의 사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된 보수지급, 투입인력과 시간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당사 현업부서인 회계팀과 내부회계팀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감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약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담당 이사의 참여도는 양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 2022년 외부감사인 계약 대비 실적

(단위: 시간, 백만원)

구 분	계 약			실 적(공시기준)			이행률		
	투입 시간	투입 인력	감사 보수	투입 시간	투입 인원	감사 보수	투입 시간	투입 인원	감사 보수
회계감사	5,328	8명	573	6,080	8명	573	114%	준수	100%
내부회계감사									

(v)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선정 사유 및 관련 비용 지급 내역 (감사 비용 및 비감사 자문용역 금액)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의 외부감사인과 감사업무 외에 관세 자문 등의 일부 비감사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분기별 사업보고서 상의 '1.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중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이 선임된 경우 지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대해 일정규모이상 기업의 감사경험, 인적역량, 보수, 징계 여부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대면회의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을 배제한 대면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총 6회 진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대면회의를 통하여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협의 내용(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필요시 관련 실적 기재)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대면회의를 통하여 주요 논의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및 협의 사항으로는 연간 감사계획과 내부회계감사 계획 및 감사진행 중 주요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 내용으로써 흥국화재 지분 추가취득, 주주간 계약에 의한 파생상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중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직속부서인 감사실에 감사실시와 보고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iii)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중요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직접 보고하거나 지원부서인 감사실을 통해 대면회의를 요청합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는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정해진 아래와 같

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합니다.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상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 ③ 감사위원회 보고사항 :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의 발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 ④ 이사회 보고사항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iv)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명 및 제출시기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결산 정기주주총회는 2023년 3월 31일에 개최되었으며, 회사는 감사 전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인 한올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 약 8주 전인 2023년 1월 25일, 연결 재무제표는 약 6주 전인 2023년 2월 8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회의 빈도가 분기별 1회 미만인 경우 등)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 현재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분기 1회 감사위원회 개최일에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6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늘려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좌기구인 감사실과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필수 기재)**

※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

구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sup>1)</sup>	(직전 공시대상기간 <sup>2)</sup> ) 준수여부		비고
		○	X		○	X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주총 2주 전 소집공고 실시중		√	
	② 전자투표 실시*		√	전자투표제 도입 X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결산 및 감사 일정상 집중일에 개최하였음		√	
이사회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통지 X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X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 운영 중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중		√	
	⑧ 집중투표제 채택		√	정관에서 배제하였음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방지를 위한 별도 정책 수립 X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표 5-①-2 참고	√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세부원칙 9-① 표2 참고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세부원칙 9-① 표3 참고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표 9-①-1 참고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세부원칙 10-② 참고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원칙9-①,나- v참고	√		